

## 4.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4,278號 1994. 6. 15
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5조의2(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) ①법  
제80조의 2 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  
하는 저축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  
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.

1.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.
  - 가.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  
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  
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(신탁에  
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)
  - 나.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  
사(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  
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)
  - 다.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
  - 라. 체신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  
한 체신관서(체신보험에 한하여 취  
급할 수 있다)
  - 마. 농업협동조합법·축산업협동조합  
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

단위조합(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  
할 수 있다)

2.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.
  3. 저축불입기간이 10년이상일 것. 다  
만,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 
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  
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  
간은 별표에 8에 의한다.
  4.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 
의 범위(체신보험의 경우에는 체신예  
금·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부령  
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)안에서 불입  
할 것.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계좌  
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 
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 
한다.
  5.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 
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 
지급받는 저축일 것.
- ②법 제80조의2 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이  
정하는 기간”은 5년으로 한다.

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 저축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

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별표 8]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8]

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(제75조의2 제1항 제3호 관련)

가입자의 출생연도	불 입 기 간	
	1994년 가입시	1995년 가입시
1949년	10년이상	9년이상
1948년	9년이상	8년이상
1947년	8년이상	7년이상
1946년	7년이상	6년이상
1945년	6년이상	5년이상
1944년이전	5년이상	5년이상

## □ 개정이유 □

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저축불입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여 주는 개인연금저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세지원이 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요건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 □

- 가. 개인연금저축은 가입대상을 만 20세이상인 자로 하고, 매월 또는 3월마다 월 기준 100만원(3월마다 불입시 300만원)의 범위안에서 10년이상 불입하며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함(영 제75조의2 제1항).
- 나. 저축계약일부터 5년내에 중도해약시에는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(영 제75조의2 제2항). 〈법제처 제공〉

**장인혼을 현장에 한국혼을 세계에**